

# 대회 운영규정

제 정 : 2010. 10. 1.  
개 정 : 2011. 3. 26.  
개 정 : 2012. 2. 25.  
개 정 : 2013. 3. 27.  
개 정 : 2015. 4. 30.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럭비협회(이하 “본 협회” 라 한다)에서 매년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국휠체어럭비대회 혹은 전국장애인럭비대회(이하 “전국대회” 라 표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5.>

## 제 2 장 대회 운영위원회

**제2조 (설치)**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본 협회에서는 전국휠체어럭비대회 운영위원회 혹은 전국장애인럭비대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시기)** 운영위원회는 전국대회 개최 6개월 이전에 구성하여 본 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           |
|-------------|-----------|
| 1. 위 원 장    | 1인        |
| 2. 경기기술위원장  | 1인        |
| 3. 심판위원장    | 1인        |
| 4. 등급분류 위원장 | 1인        |
| 5. 종목담당관    | 1인        |
| 6. 위 원      | 약간인       |
| 7. 간 사      | 약간인 (사무국) |

② 2,3,4번은 본 협회 당연직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2,3,4번의 임원 부재 시 본 협회의 별도 위원이 지목되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5.>

**제5조 (임원의 선출방법)** 위원장은 개최지 협회장 혹은 개최 시도장이 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의 선임으로 임무를 대신한다. 종목담당관은 개최지 장애인럭비협회 회장이 선임하며 본 협회에서 승인한다. 위원은 위원장에 의해 선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2. 2. 25 개정>

**제6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기 본 협회 강화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선출 운영한다. <개정 2012. 2. 25.>

1.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겸한다.

2. 실무부서는 개최 시도 지부 실정에 맞게 조직하되, 경기부, 공식행사부, 의전초청부, 인력물자부, 홍보부, 자원봉사부, 입퇴장관리부, 안전관리부(질서포함), 교통경비부, 숙소운영부, 시설지원부, 수송운영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부서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 (해산)** 운영위원회는 전국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임원으로 계속 활동하며 대회 종료 후 본 협회에 결과 보고 및 정산서 제출 후 이를 해산한다. <12. 2. 25 개정>

### 제 3 장 대회 참가

**제8조 (예선대회)** 본 협회는 전국대회 참가 시도 대표선수 및 팀을 선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선대회를 개최하여 팀을 축소 할 수 있다.

**제9조 (참가신청)** 시·도지부별 대표로 선발된 선수 및 팀은 대회참가요강에 의거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 하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인 경우 해당 시·도지부장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정 양식의 참가신청서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회참가)** 전국대회는 대회 참가요강에 따라 시도팀, 클럽팀으로 출전 가능하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본 협회 각 시·도지부 단위로 참가하여야 하며 본 협회 선수등록규정 및 대회참가요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해외선수의 참가는 본 협회 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선수의 참가는 선수등록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2. 2. 25.>

**제11조 (참가요강)** ① 전국대회의 일반사항, 시상, 참가자격, 세부종목별 참가는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본 협회의 참가요강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회개최 3~6개월 전에 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본 협회 경기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선수 변경 시 인원증감은 불가하며 대체 선수로 가능하다. 단 변경선수의 동의서와 건강관련 내용 증명을 필요로 한다.

⑤ ④의 변경은 대회전 2주전까지 마무리 하며 그 후로는 변경 할 수 없다. <12. 2. 25 개정>

**제12조 (경기방법)** 전국대회의 경기는 시·도 대항으로 한다. 혹은 클럽대항전으로 실시하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반드시 시도 대항으로 한다

## 제 4 장 경기 종목

**제13조 (경기종목)** ① Quad(쿼드)부문: 국제휠체어러키연맹에서 규정한 등급분류를 받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출전 가능하며 본 협회 등급규정에 의해 등급을 받아야 출전이 가능하다.

② Open(오픈)부문 : 쿼드부문과 쿼드외의 모든 지체장애인등급에 있어 본 협회에서 규정한 등급을 받아야 하며 그 등급이 적용 되면 출전 가능하다.

## 제 5 장 경기운영 및 경기장

**제14조 (경기운영)** 전국대회의 모든 경기는 본 협회의 경기규칙에 의하며, 본 협회의 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제15조 (경기운영방법)** 전국대회 경기종목의 경기방법은 본 협회의 경기방법에 의하되, 대진 방법은 토너먼트경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본 협회 강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6조 (일정 및 대진추첨)** ① 경기일정은 참가팀에 의해 본 협회에서 결정하며 운영한다. 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일정에 맞춰 실시한다.

② 대진은 각 시도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협회가 결정하며 운영한다.

**제17조 (지위변동)** 무자격 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무자격선수 또는 그 소속단체는 즉시 실격으로 하고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하되, 실격 선수 또는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아니한다.

**제18조 (도핑검사)** ①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도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경기장내에는 반드시 도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9조 (경기장 규격)** 본 협회 경기종목의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 정규규격과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수용인원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하게 배정하여 경기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경기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다음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체육관에서는 본 협회 규정에 의거 진행할 수가 없다.

### 1. 코트 1개 이하의 경우

① 코트 최소의 길이가 36m X 22m이상이어야 한다

- ② 휠체어 보관소 및 임원 대기실이 배정되어야 한다.
- ③ 도핑 검사실 및 응급의료 시설이 있어야 한다.
- ④ 경기장 진입로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 ⑤ 천정의 높이는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한다.
- ⑥ 음향은 경기장내 잡음이 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⑦ 조명의 밝기는 IWRF에서 지향하는 밝기가 되어야 한다. <12. 2. 25 개정>

2. 코트 2개 이상의 경우

- ① 코트 최소의 길이가 36m X 44m 이상이어야 한다
- ② ~ ⑦ 위의 사항과 동일 적용

**제20조 (시설 및 경기 용기구 등)** 대회 관련 용기구는 별표-1을 참고 하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적용된다. 또한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휠체어 수리부 혹은 장비 기술담당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21조 (대회 규모별 운영)** 경기운영에 있어 별표-3 휠체어력비 대회 규모별 현황과 같이 진행한다.<개정 2015. 4. 30.>

**제22조 (경기장 출입 신분증)** ① 본 협회는 경기장 질서를 위하여 대회임원 및 경기임원, 참가선수단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회준비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신분증을 별도로 발급한다. 이 경우 출입신분증의 견본을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장 소청 및 처리

**제23조 (소청심의위원회)** ① 전국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화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본 협회 대회 운영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② <2013.3.27 생략>

**제24조 (등급분류 소청)** 등급분류 소청에 관한 사항은 등급분류위원회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신설 2013.3.27.>

**제25조(판전 재심)** 본 협회에 승인된 대회에서 판정에 대해 휠체어력비 경기운영 규정집 6장 43조에 명시되어진 내용에 한해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판정에 대한 재심은 본 협회 강화위원에 최종 보고 승인한다. <신설 2013.3.27.>

## 제 7 장 전국 대회 유치 <신설 2011.3.26.>

**제26조 (목적)** ① 지방 장애인력비의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기본목적으로 하며 지방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 유치권한을 가지게 된다.

**제27조 (권한)** ① 전국대회 유치는 반드시 대한장애인력비협회 정식 가맹단체이어야만 한다.  
② 생활체육대회일 경우 본 협회에 별도 승인에 의해 진행한다.  
③ 3개 시도가 초과할 경우 전국대회를 유치하여야 하며 본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25.>

**제28조 (승인절차)** ① 전년도 본 협회에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한다.  
② 계획서 마감일은 본 협회에서 정한 날짜로 한다.  
③ 대회 유치 등록과 함께 대회 유치비를 별표-2와 같이 본 협회로 제출한다.  
④ 대회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후 대회 홍보물등에 본 협회의 로고등을 기입하여 제작 가능하다. <신설 2013.3.27.>

**제29조 (운영위원회)** 대회 승인절차 종료 후 대회 준비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유치 가맹단체에서 조직 운영하며 대회 종료시 30일 내 자동 소멸된다.

대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며 본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대회참가신청관리
- ② 시도 대표자 회의
- ③ 시도 대회 임원 배치 운영 관리

**제30조 (대회진행)** 제25조에 의해 대회 승인 후 본 협회와의 기본적인 예산 협의 업무 협약 후 대회진행을 한다. 또한 대회 진행에 있어 약간의 대회 참가비를 받아 운영 할 수 있으며 관리 가능하다.

**제31조 (결과보고)** 대회 종료 15일 안에 반드시 본 협회로 결과 보고 및 예산 사용 결산부분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32조 (대회 취소)** 제25조에 대회 승인절차를 걸치지 않고 이행할 경우 혹은 본 협회에서 대회운영에 대해 어렵다고 판정될 경우 대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유치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 제 8 장 대회운영 <신설 2013.3.27.>

**제33조 (등록)** 전국대회인 경우 대회모집 요강을 개최일 최소 3개월 전까지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회와 의논 후 정한 기한내에 선수(팀)등록을 받아야 한다. 선수(팀)등록을 할 경우 소정의 참가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등록마감)** 대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회 등록에 대한 기한을 정해야 하며 마감날짜는 최소 2주전에 마감되어야 한다.

**제35조 (대회의 취소)** 대회가 취소 될 경우 참가비등은 환불 해줘야 하며, 자연재해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유치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36조 (임원등록)** 각팀(선수)은 다음의 임원등록이 가능하며 휠체어럭비 경기규정에 의해서 한팀당 최대 12명의 선수 신청이 가능하다.

- ① 감독 1인
- ② 코치 1인 이상
- ③ 트레이너 1인 이상
- ④ 장비관리 약간인
- ⑤ 의무관리 약간인
- ⑥ 보호자 약간인
- ⑦ 팀스텝 약간인

**제37조 (대표자 회의)** 공식 전국대회인 경우 대표자회의등의 중요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각 팀의 대표들은 반드시 이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팀에서 감수하여야 한다.

## 제 9 장 의 전 <신설 2013.3.27.>

**제38조 (의전순)** 승인 된 휠체어럭비 경기에서는 본 협회 회장 혹은 회장을 대신한 대리인이 상석에 착석하며 다음순위는 대회운영위원 임원순으로 한다.

**제39조 (개회식)** 개회식의 순서는 개최지의 특성에 고려하여 진행하되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대회운영위원회의 대표자가 환영사를 하고 본 협회의 회장 혹은 대리인을 소개한다.
- ② 본 협회 회장 혹은 대리인은 개막을 공표하기 위한 간단한 개회사를 진행한다.
- ③ 참석하는 선수와 심판들의 선서를 진행한다.

**제40조 (폐회식)** 승인 된 모든 전국휠체어럭비대회에서는 시상식과 폐회식을 진행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팀별 순위시상은 대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반드시 본 협회와 상의한다.
- ② 메달, 트로피등에는 반드시 본 협회 로고, 마크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 제 10 장 보 칙

**제41조 (대회승인)** 지방 교류대회 및 일정 팀간의 교류대회 진행시 반드시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제21조 (대회규모별 운영)에 의하여 승인절차를 걸쳐야 한다. 교류대회 및 팀 간의 교류대회의 규정은 본 협회에서 강화위원회 혹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2. 2. 25.><개정 2015. 4. 30.>

### 부칙 (2011.3.26)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3.26)

### 부칙 (2012.2.2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 2.25)

### 부칙 (2013. 3. 2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 3.27)

### 부칙 (2015. 4. 30)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4. 30)

<별표 1> - 대회 용기구 현황 (제5장 20조)

연번	품명	규격 (제조사)	단위	수량	비고
1	(송진)	(moltern)	box	5Box	
2	선수용 장갑	(grip)	box	2Box	
3	테이핑	(Mueller)	box	5Box	
4	휠체어타이어튜브	24 “ 25 “	ea	100개	
5	경기용휠체어타이어	24 “ 25”	ea	50개	
6	휠체어럭비공	(Moltern)	ea	20개	
7	삼각콘(원뿔)	30cm ~ 50cm	ea	12개	
8	휘슬(심판용)	불없는 휘슬(Fox)	ea	10개	
9	에어펌프(자동)	220V	ea	2	
10	에어펌프(수동)		ea	4	
11	분무기	200ML이상	ea	20개	
12	구급함(구급약포함)	구급약 포함	ea	2개	
13	라인테이프(경기장 셋팅용)	폭 5cm 화이트(3M)	box	1Box	
14	줄자	50M	ea	2개	
15	경기장 바닥 유포필름공사	8mX1.75m	ea	4개	
16	스톱워치	일반용	ea	10개	
17	공구함(공구포함)	공구포함	Box	2Box	
18	40's 전광판	40초 전광판 (OP)	ea	6개	무선
19	선수교체 피켓 (영문)	50cm X 20cm	ea	2개	
20	작전타임 피켓 (영문)	50cm X 20cm	ea	2개	
21	선수단 피켓	80cmX30cm	ea	20개	
22	공격포시 화살표	50cm X 20cm	ea	2개	
23	경고카드(Yellow)	10cmX20cm	ea	2개	
24	경고카드(Red)	10cmX20cm	ea	2개	
25	메인 전광판	럭비 700 (OP)	ea	6개	무선
26	전선릴(50M)		ea	10개	
27	냉동고		ea	1개	
28	럭비용 휠체어	럭비용	ea	8개	
29	팬스	탁구용 팬스	ea	100개	

<별표-2> 대회 유치비

전국대회 유치비	2,000,000원
----------	------------

<별표-3> 휠체어럭비 대회 규모별 현황

구분	Type A	Type B		Type C	
		B1	B2	C1	C2
명칭	전국휠체어럭비대회	전국휠체어럭비대회		지역대회	
코트수	2면 이상	1면	2면 이상	1면	2면 이상
유치비	2,000천원	2,000천원		-	
참가팀	16팀 이상	10팀 이상		8팀 이하	
운영위원장	1인 (본 협회 임직원)				
기술위원장	1인 (본 협회 임직원)				
종목담당관	1인 (개최지 임직원)				
심판위원장	1인 (본 협회 심판이사)				
등급위원장	1인 (본 협회 등급분류 이사)			요청시	
소청위원	2인 (본 협회 임직원)			-	
심판	16명	12명	16명	8~10명	12~14명
기록심	24명	16명	22명	10~12명	14~16명
등급분류사	6명	4명		4명 이내	
장비안전	6명	4명		4명 이내	
운영요원	20명 이상	20명 내외		10명~20명 내외	
봉사자	50명 이상	50명 내외		30명 내외	
등급분류	인증			요청시 (인증료 500천원)	
심판	인증			요청시 (인증료 500천원)	
소청	인증			-	
참가비	100,000원 / 팀당			-	
예산	40,000천원 이상	20,000천원~40,000천원		-	
부실	심판실 (위원장실 및 집기류 별도, 샤워시설) 등급분류실 (2실, 위원장 및 집기류 별도) 도핑운영실 (화장실 운영) 협회장실 (집기류 별도) VIP실 (집기류 별도) 기술위원장실 (집기류 별도, 종목담당관, 운영위원장) 마사지실 (집기류 별도) 휠체어 보관실 (팀별에 맞게 보안가능) 기타운영실			심판실 운영본부 기술위원장실 휠체어보관실 기타운영실	
신청기간	6개월 전 신청	4개월 전 신청		3개월 전 신청	